

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착안하여 -*

A Study on Introduction Plans
of the Arbitration Aid System for Vitalizing Arbitration
- Inspired by the Litigation Aid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

박서은**

Park, Seo Eun

한애라***

Han, Ae Ra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중재 활성화의 의의
- III. 중재비용 구조의 필요성과 가능성
- IV.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도입 방안
-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중재 활성화, 중재비용, 소송구조, 재판 지연,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 본 논문은 대한상사중재원이 개최한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 수상작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주저자. nokayb1116@gmail.com.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hanaera@skku.edu.

I. 들어가며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로서(「중재법」 제3조 제1호),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일종이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단심제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거래실정에 맞는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달리 절차가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행해진다는 장점이 있다¹⁾. 자율적 분쟁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중재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중재의 주요한 장점이다.

중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저렴한 비용’이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은 소송절차가 3심제로 진행되는 반면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운영된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작지 않다. 중재비용에는 ① 관리요금, ② 경비, ③ 중재인 수당(보수), ④ 기타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데(「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2조 제1항), 기타 비용으로는 변호사비용과 검증, 감정, 증인신문, 통역 비용 등이 있다(동 규칙 제56조).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위 네 가지 비용에 신청요금 100만 원²⁾이 추가로 소요된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0조 제1항). 그러므로 중재비용은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소송비용을 능가하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이 제3절(제128조-제133조)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소송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재법」이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재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구조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① 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하여 중재가 갖는 효용성, ② 중재 활성화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의 가능성, ③ 중재에 관한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보장의 필요성과 ④ 중재비용 구조에 의한 중재 활성화의 실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재비용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와 같은 구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중재 활용 현황과 중재 활성화의 의의를 확인한 다음(Ⅱ.), 중재비용 구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하고(Ⅲ.),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착안하여 중

1)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2, pp.7-8.

2) 단,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요금이 면제된다(대한상사중재원 2019).

재비용 구조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IV.).

II. 중재 활성화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중재 활용 현황

지난 10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사건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상사중재원 접수 중재사건 현황³⁾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건 수	342	500	405	443	393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건 수	385	381	413	382	338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1>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중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의 123.5%로 크게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300건 대에서 400건 대 사이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한 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되는 중재사건은 398.2건으로, 4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중재사건 접수 건수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민사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100만 건 대였다⁴⁾. 최근 10년(2013-2022년) 중 중재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고(500건) 민사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두 번째로 적었던(89만 2,607건) 2021년의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민사 본안사건 접수 건수의 약 0.056%에 그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중재의 활용 정도는 소송의 활용 정도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중재의 효용성

이하에서는 중재가 활성화되어야 할 주된 이유로서, 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

3) 대한상사중재원, 「2022 클레임 통계」, 2023, p.2.

대한상사중재원, 「2017 클레임 통계」, 2018, p.2.

4)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2022, p.675.

하여 중재가 갖는 효용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신속성

2022년 확정된 민사 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의 평균 처리기간⁵⁾은 1심 확정의 경우 합의부 사건(24,069건)은 377.5일, 단독 사건(183,845건)은 205.1일, 소액 사건(489,812건)은 135.4일이었고, 항소심 확정의 경우 고등법원 사건(8,825건)은 853.1일, 지방법원 사건(32,481건)은 709.7일이었으며, 상고심 확정의 경우 합의부 사건(9,209건)은 1,095.2일, 단독 및 소액 사건(7,243건)은 970.5일이었다⁶⁾.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중재 사건의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90일이었다⁷⁾. 그렇다면 소액 사건이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사건에 대한 중재절차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민사 본안절차보다 더 신속히 처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수록 지연손해금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지출이 줄어들고, 권리 구제가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적어지며, 시간적 손실 자체도 줄어든다. 따라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 유연성

소송의 경우 사건 담당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지고 당사자는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엄격하고 비탄력적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재판부만이 결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법원의 사실인정에 「민법」, 「상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적용한 결과로 정해진다. 반면 중재절차에서는 중재인의 수(「중재법」 제11조 제1항), 중재인의 선정(제12조), 중재인의 자격(제13조 제2항),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제14조 제1항), 중재인의 권한 종료(제15조 제1항), 중재절차(제20조), 중재지(제21조), 중재절차의 개시(제22조),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제23조), 중재 신청서 제출 기간(제24조 제1항), 구술심리 여부(제25조 제1항), 중재판정의 근거 적시 여부(제32조 제2항), 중재비용의 부담(제34조의2), 지연이자(제34조의3) 등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실체판단에 있어서도 재판은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지만,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법률을 적용하거나 그 직역에만 통용되는 원칙 등을 적용하거나, 법률이 아닌 형평과 선(善)에 따라 실체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중재법」 제29조 제3항)⁸⁾.

5) 2022년 확정된 사건의 확정 심급별 1심 접수일부터 최종 심급 종국일까지의 기간

6)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2023, p.724.

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2022, p.7.

8)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p.7.

따라서 엄격한 법리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⁹⁾.

이처럼 중재는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통제권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부터 적용할 법, 중재지, 언어, 비용의 분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도 적게 발생하여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다.

(3) 중립성

국제거래의 경우 중립성의 요청으로 인하여 어느 한 당사자 국가의 법원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중재인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국제중재가 유일한 또는 원칙적인 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¹⁰⁾. 국제 분쟁의 해결을 소송절차에 의한다면 일방 당사자의 국적국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 법원의 편파성을 우려하게 된다¹¹⁾. 하지만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일반 당사자 국가의 법원이 아닌 제3국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제 분쟁의 해결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¹²⁾.

(4) 전문성

분쟁의 대상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경우 법원도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재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를 판단자인 중재인으로 선택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¹³⁾, 각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중재인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¹⁴⁾.

(5) 비공개성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본문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반면에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중재를 분쟁 해결 절차로 선택하면 기업의 영업 기밀은 물론 대외적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¹⁵⁾.

9) 안순철·최장섭,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분쟁해결연구』, 제1권(창간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3, p.10.
 10)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p.5.
 11)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p.9.
 12) 국회입법조사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2019, p.2.
 13)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p.8.
 14) 국회입법조사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2019, p.2.
 15) 김성룡·안건형, “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비교연구”, 『仲裁研究』,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p.77.

(6) 우호성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누가 얼마나 잘 못했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타협하고 협력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판은 과거지향적 방식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 간의 미래 관계는 판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과거지향적 분쟁 해결은 소송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킨다¹⁶⁾. 이와 달리,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의 갈등 관계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 더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고, 이로써 당사자들은 장래에도 원만하고 지속적인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¹⁷⁾.

(7) 실효성

중재는 신속성, 유연성, 중립성, 전문성, 비공개성, 우호성 등 여러 면에서 소송에 비해 유리하면서도, 알선이나 조정보다 실효적이다. 알선과 조정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비소송적 분쟁 해결 방법이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 제시하는 해결안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면 중재판정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동법 제35조)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재는 해결안의 실효성 확보 면에서 알선이나 조정보다 뛰어나다.

(8) 소결

이처럼 중재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할 때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다. 특히 ① 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 ② IT, 지식재산권, 노사 등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 ③ 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 ④ 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 ⑤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¹⁸⁾ 등에는 중재의 효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더 많은 이들이 분쟁 해결에 중재를 활용하여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중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6) 안순철·최장섭,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분쟁해결연구」, 제1권(창간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3, p.9.

17) 이동학, “사회통합을 위한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저스티스」, 제134-3호, 한국법학원, 2013, p.443.

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안내”, 2024년 3월 4일 접속,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jsp.

3.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

(1) 재판 지연 문제의 심각성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관 인력의 증가로 인해 법관 1인이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2019년의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수는 2005년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⁹⁾. 그러나 과거에 비해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민사소송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98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1980년대 초에 2개월이던 것이 2015년경에는 민사소송법이 권장하는 처리기간인 5개월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6개월을 초과했다²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022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판 지연과 관련한 회원 불편 사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장 제출 후부터 1심 선고기일까지의 소요 시간은 1년 6개월 이내 54%(318명), 2년 이내 26%(151명), 1년 이내 14%(85명), 2년 이상 6%(38명)로 나타났다. 위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연손해금이 원금만큼 커진 사례, 당사자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등 재판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²¹⁾.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유명한 법언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하였듯이 우리 국민은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 지연의 해소가 절실한 시점이다.

(2) 중재 활성화를 통한 재판 지연의 해소 가능성

재판 지연의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는 법관 증원이 꼽힌다. 그러나 법관 증원에는 법률 개정이 요구되므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며, 예산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재판 지연의 해소를 법관 증원에만 기대기보다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법관 증원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본안사건을 접수하는 대신에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재판 지연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의 수에 비례하여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중재의 활성화는 재판 지연의 해소에 기여할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2022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법관 현원은 3,016명이었는데 같은 해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19) 김두열,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p.17.

20) 김두열,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p.19.

21) 임혜령,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지연 경험...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사례도’”, 「법조신문」, 2022. 8. 25.자, 접속일 2024. 3. 4.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551>.

사건) 수는 122만 1,301건이었으므로²²⁾ 법관 1명은 연간 404.94건의 본안사건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405건의 분쟁에서 법원의 본안사건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그 해결절차로 선택될 때마다 법관 1명이 증원된 것과 같은 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사건 수는 연평균 398.2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가 현재의 7배만큼 활성화될 경우, 1년에 접수되는 중재사건 수는 현재와 비교해 2,389건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연간 2,389건의 본안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지 않을 것이므로, 재판 지연 해소에 있어서 법관 5.9명을 증원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재판 지연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중재의 활성화가 재판 지연의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재의 활성화는 법관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법관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를 지출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4. 소결

우리나라는 아직 중재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중재는 상당수의 분야에 있어 가장 대표적이고 효율적인 비소송적 분쟁해결방안이므로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고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 폭주하는 소송사건을 줄여 사회적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²³⁾. 중재의 활성화로 인해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지가 증가하면, 분쟁의 당사자들은 당사자 및 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사회적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택지의 증가는 사회적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의 활성화는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Ⅲ. 중재비용 구조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중재비용 구조의 의미

본 논문이 도입을 제안하는 중재비용 구조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서 착안한 개념이

22)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2023, p.186, 701.

23)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p.390.

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을 내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중재비용 구조는 중재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재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을 내지 않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비용 구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중재비용 구조가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2. 중재비용 구조의 필요성

(1) 중재비용과 소송비용의 비교

중재비용 구조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재비용이 과연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만큼 큰 금액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소송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비교 기준으로 하여 중재비용이 구조가 필요한 정도의 금액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비용에는 ① 관리요금, ② 경비, ③ 중재인 수당(보수), ④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고,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위 네 가지 비용에 신청요금 100만 원²⁴⁾이 추가로 소요된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0조 제1항).

관리요금은 중재의 신청인이 관리요금표에 따라 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이며(「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3조), 경비는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동 규칙 제54조). 중재인 수당은 중재인에게 주어지는 보수를 의미하며, 기타 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나 검증, 감정, 증인신문, 통역 등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동 규칙 제56조).

한편,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① 민사소송비용법상의 비용과 ② 변호사비용이 있다. 민사소송비용법상의 비용이란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로 등(제3조),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여비 등(제4조), 법관 등의 일당·여비(제5조), 감정 등에 대한 특별요금(제6조), 통신비(제7조), 공고비(제8조), 기타 비용(제9조)을 말한다.

소송이 1심에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중재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과 경비’는 소송비용 중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에 대응시킬 수 있다.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과 경비는 중재비용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으로 발생

24) 단,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요금이 면제된다(대한상사중재원 2019).

하든 대동소이한 금액일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이 1심에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중재와 소송 중 어느 쪽을 통해 해결하든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변호사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재의 승자가 소송의 승자에 비해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자라고 할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반면 중재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6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3조). 다만 ‘중재비용 중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 간의 격차를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비용은 아래의 비교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면 중재비용으로는 관리요금, 중재인 수당, 신청요금이 남고, 소송비용 중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남는다. 그런데 신청요금은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국제중재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종적으로 남는, 신청금액에 따른 관리요금 및 중재인 수당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중재비용과 소송비용의 비교표

신청금액 · 소송목적의 값	중재비용 ²⁵⁾ (단위 : 천원)			소송비용 ²⁶⁾²⁷⁾ (단위 : 천원)		
	관리요금	당사자 부담 중재인 수당	합계액	인지액	송달료	합계액
1백만 원	55	0	55	4.5	52	56.5
5백만 원				22.5		74.5
1천만 원				45		97
5천만 원	247.5	100	347.5	207	78	285
1억 원	495	300	795	409.5		487.5
5억 원	3,630	2,620	6,250	1,849.5		1,927.5
10억 원	6,380	9,960	16,340	3,649.5		3,727.5
50억 원	28,380	17,850	46,230	16,249.5		16,327.5
100억 원	42,130	23,100	65,230	31,999.5		32,077.5
금액·소가 없음	1,100	3,000	4,100	207		285
				409.5		4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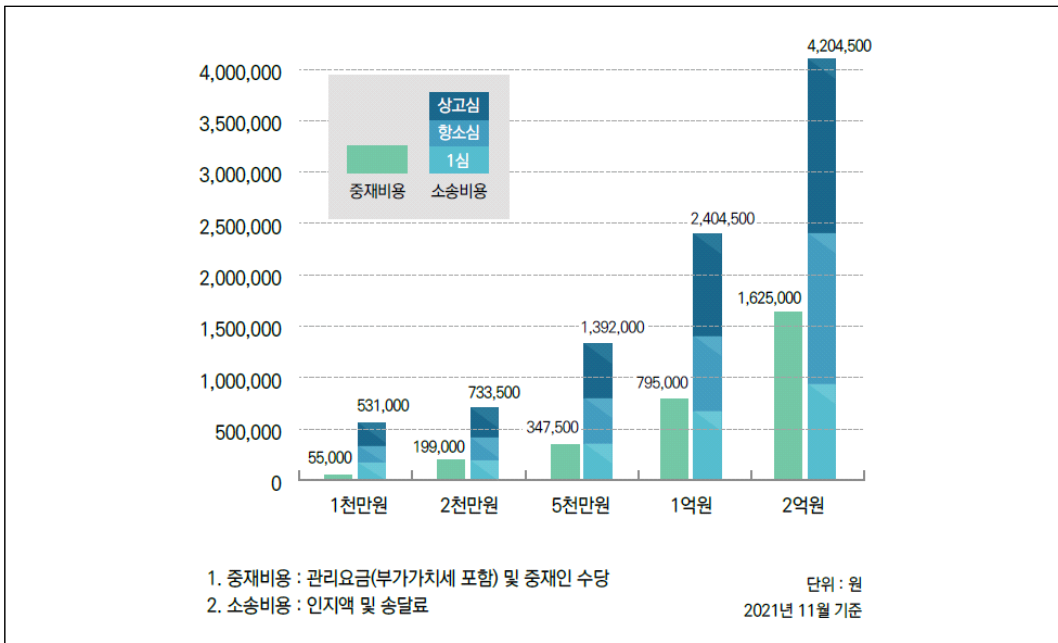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함.

2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계산”, 2024년 3월 4일 접속,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calc.jsp#a.

<표 2>를 보면, 신청금액·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재비용의 합계액이 소송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청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관리요금은 5만 5천 원으로, 중재인 수당은 0원으로 고정되지만, 인지액은 소가의 증가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청금액·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재비용의 합계액이 소송비용의 합계액보다 많다. 이는 신청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요금과 중재인 수당도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소가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송달료는 7만 8천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의 중재비용 합계액은 일률적으로 410만 원인데,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의 경우 소송비용 합계액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소가에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결과, 신청금액·소송목적의 값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비용 합계액이 소송비용 합계액의 8.41배 또는 14.4배로 나타난다.

<그림 1> 중재비용과 소송비용의 비교 그래프²⁸⁾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자료

26)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소송비용 계산”, 2024년 3월 4일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

27) 인지액은 민사1심사건으로,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1명씩인 민사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 또는 민사 단독/합의사건(소가 3천만 원 초과)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금액이다.

2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2022, p.6.

지금까지 중재비용과 소송비용을 간략화하여 그 다소를 비교해보았다. 위의 비교는 소송이 1심에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중재비용 중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관리요금과 중재인 수당만을 생각하더라도 중재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과 비슷하거나 소송비용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1>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2) 중재비용 구조의 이론적 근거

중재비용 구조의 이론적 근거로는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들 수 있다. 사법접근권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민사 법률구조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방안 등을 폭넓게 지칭한다²⁹⁾. 종래 사법접근권은 사법기관(법원)에 대한 접근성 내지 그 접근의 보장을 의미했으나 20세기 중반에 전반적 사법개혁운동을 거치면서 국가기관 여부나 통상의 사법절차 여부를 불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접근성 또는 접근성 제고의 가치를 의미하게 되었다³⁰⁾.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접근권의 제고는 호주, 영국, 미국 등 영미 국가를 중심으로 중재에 활용되고 있는 ‘제3자 자금지원³¹⁾’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 논거가 되고 있다³²⁾.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재비용은 소송비용과 비슷하거나 소송비용을 능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와 함께 지난 6월 20-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36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3 법 인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소송을 통한 공정한 법률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51.1%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32.3%)’가 꼽혔다³³⁾. 이처럼 비용의 부담은 소송에 대한 사법접근권의 주된 방해 요인이 되며, 이는 중재에 대한 사법접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 중재 선진국들이 제3자 자금지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재비용의 부담이 중재에 대한 사법접근권의 방해 요인임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것이다.

29) 정한중,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281.

30) 한유진,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法曹』, 제70권 제6호, 법조협회, 2021, p.93.

31)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금 신청자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금 신청자가 얻게 되는 배상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제도

32) 이해민, “Third-Party Funding(제3자 자금지원)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저스티스』, 제173호, 한국법학원, 2019, pp.117-118.

33) 홍성윤 외 3인, 아시아투데이, “[소송 소외] ①대한민국은 ‘소송 포비아’ 국가”, 『아시아투데이』, 2023. 7. 25.자, 접속일 2024. 3. 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23010012693>.

소송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권리에 해당하는 반면 중재에 대한 사법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중재는 상당수의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율적인 비소송적 분쟁해결절차로 평가되고 있고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할 때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도입은 중재에 대한 사법접근권의 방해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송보다 중재가 분쟁의 해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재를 그 해결절차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중재비용 구조의 현실적 근거

중재비용 구조의 현실적 근거 중 하나는 중재비용 구조가 중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2022. 6.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중재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며, ‘중재’를 막연하게 분쟁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라거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갈 수 있는 제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³⁴⁾. 한편, 중재가 많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가 소송제도보다 더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중재제도가 소송제도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가진 만큼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단점과 문제점을 검유하고 있으므로 그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여야만 중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런데 중재비용 구조제도를 도입하면 그로 인한 홍보 효과로 중재제도의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고 중재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근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자 자금지원의 도입이 어려우며 제3자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자금제공자의 사건에 대한 개입이 문제될 수 있다³⁶⁾는 점이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제3자 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³⁷⁾, 동법 제109조의 문리해석상 사적 중재기구가 중재를 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 및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인으로 활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변호사나 아닌 자가 중재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비용을 받은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사건을 대리해주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³⁸⁾. 따라서 위 규정이 존재하는 한

34) 남태규,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돼 6개월 내 분쟁 해결 가능”,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 6. 13.자, 접속일 2024. 3. 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29>.

35)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p.400.

36) 전성재,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소고-중재시장의 활로를 찾아서-”, 「法曹」, 제66권 제6호, 법조협회, 2017, p.41.

37)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2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p.278.

38)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仲裁研究」, 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8, p.11.

제3자 자금지원의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3자 자금지원에는 다수의 중재기관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중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³⁹⁾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금지원자가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만 확보되는 순간 바로 화해 등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당사자에게 종용하거나, 당사자가 패소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분쟁을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이익을 위해 쟁송을 지속할 것을 강요하는 등 자금지원자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⁴⁰⁾는 문제가 있다. 제3자 자금지원과는 달리 중재비용 구조제도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제공자의 사건에 대한 개입이 문제될 우려가 없으므로, 중재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중재비용 구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중재비용 구조의 가능성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원이 구조결정을 하더라도 집행할 예산이 없다면 그에 따른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¹⁾. 이와 마찬가지로, 중재비용 구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재비용 구조에 사용할 자금의 확보가 요구된다. 국내 유일의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므로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다. 따라서 중재비용 구제제도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비용 구조에 필요한 추가적인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면, 중재비용 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도의 도입 방안을 논의할 실익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중재법」 제40조는, 중재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정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3조), 법무부장관은 ①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②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9)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仲裁研究』, 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8, p.10.

40) 이해민, “Third-Party Funding(제3자 자금지원)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저스티스』, 제173호, 한국법학원, 2019,

41)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4.

③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지원’은 재원의 직접 출연과 사업비 보조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법무부는 위 규정들과 ‘2019~2023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연 2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⁴³⁾. 따라서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로부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운영에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인가? 이 또한 소송구조에 소요되는 재원을 토대로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2016-2021년의 소송구조 예산 및 집행 현황이다.

<표 3> 소송구조 예산 및 집행 현황⁴⁴⁾

	소송구조		집행률
	예산액(단위 : 백만 원)	집행액(단위 : 백만 원)	
2016년	5,067	4,945	98%
2017년	4,560	4,403	97%
2018년	6,022	4,197	70%
2019년	6,249	4,279	68%
2020년	5,337	4,903	92%
2021년	5,933	5,534	93%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내부자료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신청에 따라 인용되었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소송구조 건수(지방법원)는 <표 4>와 같다.

42)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仲裁研究』, 제27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7, p.47.
 43) 박선정·강한, “(단독) “국제중재 독립·전문화 해야”… 법무부 용역보고서 나왔다”, 『법률신문』, 2023. 2. 20.자, 접속일 2024. 3. 4, <https://www.lawtimes.co.kr/news/185431?serial=185431>.
 44)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p.143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내부자료. 재인용.

〈표 4〉 소송구조 건수(지방법원⁴⁵⁾) 현황⁴⁶⁾

	소송구조 신청 인용 건수	직권 소송구조 건수 (본안)	계
2016년	4,315	226	4,541
2017년	2,890	223	3,113
2018년	2,906	296	3,202
2019년	3,667	336	4,003
2020년	4,077	614	4,691
2021년	4,398	638	5,036

출처 :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3>과 <표 4>를 기초로 계산하면 2016-2021년 기간의 연평균 소송구조 집행액은 약 47억 1천만 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지방법원의 연평균 소송구조 건수는 약 4,098건이다. 최근 6년간의 소송구조가 모두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소송구조 1건당 약 11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앞서 III. 2. (1)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송이 2심이나 3심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중재비용이 소송비용보다 적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이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라면 중재비용은 소송비용과 비슷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에 확정된 민사 본안사건의 수는 1심에서 확정된 소액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1심 확정의 경우가 20만 7,914건(= 합의부 24,069건 + 단독 183,845건)으로, 2심 또는 3심 확정의 경우인 5만 7,758건(= 항소심 고등법원 8,825건 + 항소심 지방법원 32,481건 + 상고심 합의부 9,209건 + 상고심 단독 및 소액 7,243건)의 3.6배이다⁴⁷⁾.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재구조의 경우에도 1건당 115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IV.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도입 방안

IV.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착안하여 고안한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송구조의 경우 구조의 요건 등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법」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기준 및 절차는 「민사소송규칙」과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로 정하고 있다. 중재구조의 경우에도 그 주된 내용은 「중재법」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과

45)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소송구조 건수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46)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2022, p.789.

47)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2023, p.724.

운영기준 및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한다.

1. 중재구조의 신청

(1) 신청인

소송구조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에는 원고·피고·참가인·소송승계인 등이 포함되며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제3항)⁴⁸⁾. 현행법상 법인도 공법인·사법인,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송구조가 허용된다⁴⁹⁾.

중재구조의 경우에도 중재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중재 계속 중의 당사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인이나 법인이라 할지라도 요건 구비 시에는 중재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판단 주체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따라서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이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소송구조 요건을 판단하는 재판부와 본안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 예단을 형성할 위험성이 있다⁵¹⁾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구조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임직원, 중재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중재구조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회로 하여금 중재구조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재구조심의회가 모든 중재구조 신청을 심사하게 한다면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재구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구조 및 중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중재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48)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p.19.

49)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19.

50)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20.

51)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p.208.

것(무자력)과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제128조)⁵²⁾.

(1) 무자력

소송구조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소송구조 제도상의 고유한 개념이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상되는 소송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29조 소정의 재판비용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된 소송비용뿐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 계속 전 또는 계속 중에 지출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된다는 무한정설이 다수설이다⁵³⁾. 한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에 따르면 소송구조 신청인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구조의 경우에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자력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중재비용’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 중재비용의 범위를 ① 관리요금, ② 경비, ③ 중재인 수당(보수), ④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⑤ 국제중재의 경우 신청요금 100만 원⁵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출하면 될 것이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적극적으로 패소할 위험이 적은 경우가 아니라 패소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이다⁵⁵⁾. 따라서 구조신청 당시 소송의 진전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이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요건에 관하여는, 실제 소송구조 실무에서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본안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본안과 동일한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

52)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p.21.

53)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p.31-33.

54) 단,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요금이 면제된다(대한상사중재원 2019).

55) 진상범, 「주석 민사소송법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p.226.

단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⁵⁶⁾.

생각건대, ① 승소가능성 요건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⁵⁷⁾, ②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③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인의 남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재구조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로부터 독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구조심의회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남용임이 분명한 경우 등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⁵⁸⁾의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소송구조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중재구조결정

소송구조의 경우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구조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⁵⁹⁾. 신청인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소송구조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3조).

중재구조의 경우에도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중재구조결정을 하고, 구조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중재구조를 거절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중재구조심의회의 중재구조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법」 제34조의2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이를 중재사건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중재비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재판정에 포함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재구조심의회를 중재구조의 판단 주체로 설정함에 따른 장점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 상대방이 중재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상대방으로부터 유예된 중재비용을 추심하거나, 중재구조가 취소되었는데도 신청인이 납입을 유예한 중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7조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재비용을 추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은 중재구조를 거절하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고, 중재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신청인에 대하여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중재구조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6)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p.170.

57)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30.

58)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40.

59)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47, 49.

4. 중재구조의 범위 및 구조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①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②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채당금의 지급유예, ③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④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이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 항목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구조결정은 일반 원칙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동법 제221조 제1항), 구조결정의 성질상 결정에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구조 신청 시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구조결정의 효력이 신청시로 소급하여 미치게 될 것이다⁶⁰⁾.

소송구조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중재에 대한 중재구조의 범위는 ①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2조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1조의 중재비용에 대한 납입유예, ②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지급유예, ③ 「중재법」 제18조의4에 따른 담보제공의 면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중재구조심의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 항목 중 일부에 대한 중재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구조결정은 「중재법」 제4조 및 「민법」 제1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결정에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구조 신청 시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구조결정의 효력이 신청시로 소급하게 될 것이다.

5. 기타

그 외에 구조의 취소,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 납입이 유예된 중재비용의 추심,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 등은 소송구조의 경우를 준용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납입이 유예된 소송비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대한상사중재원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납입이 유예된 중재비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다.

60) 법원행정처, 「소송구조실무」, 2002, p.64.

V. 나가며

중재는 신속성, 유연성, 중립성, 전문성, 비공개성, 우호성, 실효성 등의 장점을 가진, 상당수의 분야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비소송적 분쟁해결방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재 활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중재는 그 효용만큼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분쟁의 원만하고 종국적인 해결과 그로 인한 소송 지연의 해소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고려하면 중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재에 대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재비용에 대한 구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재 활성화 방안으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금 신청자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금 신청자가 얻게 되는 배상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제도인 제3자 자금조달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제3자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고⁶¹⁾, 자금제공자의 사건에 대한 개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⁶²⁾ 이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여러 중재 선진국들이 제3자 자금제공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중재비용의 부담이 중재에 대한 사법접근권의 방해 요인임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들어 중재비용 구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본다.

61)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2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p.278.

62) 전성재,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소고-중재시장의 활로를 찾아서-”, 『法曹』, 제66권 제6호, 법조협회, 2017, p.41.

참고문헌

1. 단행본·논문·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2019.
- 김갑유 외 5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 김두얼,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 김성룡·안건형, “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비교연구”, 「仲裁研究」,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 대한상사중재원, 「2022 클레임 통계」, 2023.
- _____, 「2017 클레임 통계」, 2018.
- _____,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2022.
-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 박미정·이학구,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2022.
- _____, 「2023 사법연감」, 2023.
- _____, 「소송구조실무」, 2002.
-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仲裁研究」, 제27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7.
- 안순철·최장섭,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분쟁해결연구」, 제1권(창간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3.
-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仲裁研究」, 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8.
- 이동학, “사회통합을 위한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저스티스」, 제134-3호, 한국법학원, 2013.
- 이혜민, “Third-Party Funding(제3자 자금지원)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저스티스」, 제173호, 한국법학원, 2019.
-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2.
- 전성재,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소고-중재시장의 활로를 찾아서-”, 「法曹」, 제66권 제6호, 법조협회, 2017.
-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 정한중,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진상범, 「주석 민사소송법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한유진,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法曹」, 제70권 제6호, 법조협회, 2021.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2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2. 전자자료

남태규,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돼 6개월 내 분쟁 해결 가능”,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 6.

13.자, 접속일 2024. 3. 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29>.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소송비용 계산”, 2024년 3월 4일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계산”, 2024년 3월 4일 접속,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calc.jsp#a.

_____ , “중재 안내”, 2024년 3월 4일 접속,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jsp.

박선정·강한, “(단독) “국제중재 독립·전문화 해야”... 법무부 용역보고서 나왔다“, 「법률신문」,

2023. 2. 20.자, 접속일 2024. 3. 4,

<https://www.lawtimes.co.kr/news/185431?serial=185431>.

임혜령,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지연 경험...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사례도”“, 「법조신문」,

2022. 8. 25.자, 접속일 2024. 3. 4,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551>.

홍성울 외 3인, 아시아투데이, “[소송 소외] ①대한민국은 ‘소송 포비아’ 국가”, 「아시아투데이」,

2023. 7. 25.자, 접속일 2024. 3. 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23010012693>.

ABSTRACT

A Study on Introduction Plans of the Arbitration Aid System for Vitalizing Arbitration - Inspired by the Litigation Aid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

Park, Seo Eun
Han, Ae Ra

“Arbitration” is a procedure to settle a dispute over property rights or disputes based on non-property rights that the parties can resolve through a reconciliation, not by a judgment of a court, but by an award of an arbitrator, and is a kin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rbitration i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efficient ADR system in many fields, so by activating it, disputes can be resolved smoothly and ultimately, and social costs caused by a heavy increase in lawsuit can be reduced.

Arbitration costs are often evaluated as 'cheap', but in reality, they can be similar to or exceed litigation costs. Nevertheless, unlike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litig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litigation costs, the Arbitration Act or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have the arbitr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arbitration costs. However, considering ① the utility of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litigation, ②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rial delays through vitalizing arbitration, ③ the need to guarantee access to arbitration, ④ the feasibility of revitalizing arbitration by the arbitration aid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Aid System.

To explain the details of the Arbitration Aid System,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rbitration or a party who continues arbitration could be the applicant. Regarding the judge,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council for arbitration ai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prejudgment by the arbitral tribunal. Also, if the council accepts the application for arbitration ai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the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considering the decision of the council and to include it into arbitral awards.

Key Words : Vitalizing arbitration, Arbitration costs, Litigation aid system, Trial delays, Access to justice.